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구윤철<br>(재정경제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채납 정리의 효율화를 위해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와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방법을 규정하고, 국세청이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매각 절차를 규정하고,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직전 2년간의 채납액 납부 비율에서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채납액 납부 비율로 완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사업자등록증명을 포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절차 등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채납자에 대한 실태현황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 실태확인원 채용 대상, 실태확인원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가상자산 매각 대행 절차 규정(안 제74조의2)

국세청이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 위한 가상자산 매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다.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안 제105조 제2항)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직전 2년간의 채납액 납부 비율에서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채납액 납부 비율로 완화하려는 것임.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106조의2 제1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출입국사실증명, 주민 등록표 등본, 토지대장 등이었으나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마.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108조)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시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려는 것임.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의2제2

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②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주소지·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확인원이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국세청장이 정한 증표를 해당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 세법,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안전하게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3조 본문 중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는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으로,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71조 및 제72조 본문 중 “공매대행”은 “가상자산의 매각대행”으로, 법 제66조 제2항 제3호 “공매”는 “가상자산의 매각”으로, 제71조의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의뢰 받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는 등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을 중지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 중 “최근 2년 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text{최근 2년 간의 채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math> </div> <p>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채납액</p> <p>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u>전전년 초일부터</u><br/> <u>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채납액 중 납부한 금액</u></p> |
|---------------------------------------------------------------------------------------------------------------------------------------------------------------------------------------------------------------------------------------------------------------------------------------|

제10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벌칙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신 설>  | <p><u>제3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u></p> <p><u>②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주소지·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확인원이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국세청장이 정한 증표를 해당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u>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 세법,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안전하게 실태</u></p> |

<신 설>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고 주기적  
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실태확인 업무 수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장이 정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  
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  
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에 관  
하여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  
조 제1항, 제73조 본문 중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  
매”는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으로,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71조  
및 제72조 본문 중 “공매대행”  
은 “가상자산의 매각대행”으로,  
법 제66조 제2항 제3호 “공매”

제105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채납액 납부비

는 “가상자산의 매각”으로, 제71조의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의뢰 받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는 등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없이 가상자산의 매각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제105조(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채납액 -----

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frac{\text{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text{체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액

2.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frac{\text{체납액 납부비율}}{\text{체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 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

|                                                                 |                                                                                                                                                            |
|-----------------------------------------------------------------|------------------------------------------------------------------------------------------------------------------------------------------------------------|
|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u>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장 벌칙</u></p> <p><u>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u></p> <p><u>제1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u></p> <p><u>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u></p> |
|-----------------------------------------------------------------|------------------------------------------------------------------------------------------------------------------------------------------------------------|

[별표 1]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 (이하 “취득자료”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16조제1항 |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취득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비고: 위 표에서 “취득자료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취득자료는 1건으로 하며, 1인의 취득자료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취득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